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2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법정)이 기존 「충청북도 사회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비법정)에 포함 운영되고 있어,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분리하여 조례 제정 필요
- 재해구호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활동 지원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법정)이 기존 「충청북도 사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비법정)에 포함 운영되고 있어,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분리하여 제정한 것임.
※ 재해구호지원 업무는 현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건복지국 소관임.
- 「재해구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제14조), 이를 통해 재난 시 즉각적인 구호 활동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그간 사회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해왔으나, 타 시도(충북 외 16개 시도 모두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조례로 관리 중)와 마찬가지로 법정기금으로서 독립적인 관리·운용이 요구됨.
- 특히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반영한 관리 조례가 필요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함.
- 재원으로는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금의 용도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과 ‘다른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으로 정한 것은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함.

○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도 보건복지국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 점, ▲사회보장위원회가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어 위원회 기능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해구호기금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재해구호기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現 보건복지국 소관임.
 - 그러나 기금의 성격 및 용도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기금’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도 소관부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의 성격 및 용도와 유사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 또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충북, 부산, 대전,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재난안전 담당실·국에서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를 현행 보건복지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

하고, 안 제5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함.

- 안 제6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이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행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금 집행의 공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내실있는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앞서 언급한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를 현행 보건복지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다른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 팀장

제7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填)한다.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①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목적: 재해발생에 따른 구호활동을 지원하여 이재민 등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
- 사업위치 : 충북 11개 시·군
- 사업내용
 - (예방) 재해구호물자 구입, 구호관계인 훈련 등
 - (구호)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지원, 심리회복지원 등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사업(폭염·한파 피해 예방, 소상공인 지원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재해구호 예비 사업, 재난 발생 시 구호지원사업

3. 관련조문

- 안 제3조(기금의 용도)
 -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지원
 - 타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입 : 2025년도 수입 예상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세출 : 2025년도 재해구호 지원사업비 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법정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보통세입 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재해구호법 제15조에 근거 매년 적립
- 산출근거
 - 재해구호물자 구입 : 155천원 × 900세트 = 139,500천원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 100천원 × 300명 = 30,000천원
 - 재해구호장비 유지비 : 30천원 × 12개월 = 360천원
 - 포괄적 재해구호비(법정적립액의 10%) : 7,933,434천원 × 0.1 = 793,344천원
 -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책 추진 : 26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재해구호기금(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 입		9,169,234	9,169,234	9,169,234	9,169,234	9,169,234	45,846,170
	이자수입	1,235,800	1,235,800	1,235,800	1,235,800	1,235,800	6,179,000
	전입금(법정적립액)	7,933,434	7,933,434	7,933,434	7,933,434	7,933,434	39,667,170
세 출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6,116,020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사업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6,116,020
재원 조달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6,116,020
	기 금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1,223,204	6,116,020